

의안번호	2220545
의 퇴 인	윤후덕 의원
회 답 일	2026.9.21.
추계번호	26E39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환급액 및 환급한도 확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환급액 및 환급한도를 확대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712억원 등 2027~2029년까지 3년간 총 2,135억원(연평균 71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환급액 및 환급한도 확대 (안 제111조의2)	-712	-712	-712	-2,135	-712
교통·에너지·환경세	-694	-694	-694	-2,082	-694
개별소비세	-18	-18	-18	-53	-18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11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경형 승용·승합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 (환급단가) (현행) 휘발유·경유 250원/L → (개정안) 300원/L - (환급한도) (현행) 연간 30만원 → (개정안) 연간 40만원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29.12.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11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의 시행일 및 연장된 적용기한을 고려하여 2027~2029년을 추계기간으로 설정
 - 개정안은 2027.1.1.부터 시행하고,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로 3년 연장
-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5년 유종별 환급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하되, 유종별 환급단가의 차이를 고려하여 휘발유·경유분 세수효과와 LPG부탄분 세수효과를 구분하여 추계한 뒤 이를 합산하여 총 세수효과 산출
 - 휘발유와 경유는 동일하게 250원/L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환급되나,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이 환급되므로 탄력세율 변화에 따라 환급단가에 변동이 있음
 - 2022년 연간 환급한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여 2022년 이후의 자료만 활용
- 연간 개별소비세 환급액이 환급 한도액(30만원) 미만인 경우와 한도액인 경우를 구분하여 세수효과를 추계함
 - 연간 개별소비세 환급액이 한도액(3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개별소비세액과 환급액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 환급액이 한도액(30만원)인 경우는 개별소비세액을 특정할 수 없음
 - 한도액만큼 환급을 받은 경우는 연료를 환급 한도 이상으로 사용한 경우이므로 개정안에 따라 한도액 인상 시 인상된 한도액 만큼 유류세를 환급받는 것으로 가정

□ 추계기간 동안 LPG부탄에 대한 환급단가(탄력세율)는 2026년 4월 수준을 유지한다고 전제

- LPG부탄에 대해서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247.5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26년 5~9월 206원/kg으로 41.5원/kg 인하되었음
- 이는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을 고려한 조치로 동 조치의 지속기간 등을 현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어 2026년 말까지 유지되고, 2027년 이후 종전(2026년 4월) 수준으로 환원되어 유지된다고 전제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는 배기량 1,000cc미만인 경형 승용·승합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 연료용 휘발유·경유 및 LPG부탄을 구매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액을 연간 30만원 한도로 환급하는 제도임
 - 휘발유·경유에 대하여는 250원/L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LPG부탄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전액(206원/kg, 2026.9. 기준)이 환급됨
-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동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은 2024년 598억원, 2025년 579억원 등으로 나타남

[표 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실적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전망)
조세지출 실적	488	549	599	598	579	564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추계방법

(1) 휘발유·경유분 세수효과 추계

□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5년 휘발유·경유분 환급 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3] 2022~2025년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실적: 휘발유·경유
(단위: 건, 백만원)

		2022	2023	2024	2025	2022~2025 연평균
현행 한도액 (30만원) 미만 환급	환급건수	409,014	401,999	393,990	383,809	397,203
	환급액	47,432	48,088	47,628	45,935	47,271
	건당 환급액 (만원)	12	12	12	12	12
현행 한도액 (30만원) 환급	환급건수	24,225	33,178	35,236	33,914	31,638
	환급액	7,275	9,982	10,588	10,192	9,509
	건당 환급액 (만원)	30	30	30	30	30
전체	환급건수	433,239	435,177	429,226	417,723	428,841
	환급액	54,707	58,070	58,216	56,127	56,780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향후 추계기간 동안 휘발유·경유분 환급건수와 환급액은 2022~2025년 연평균 환급액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되, 현행 한도액 미만으로 환급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따른 환급단가 인상률(250→300원, 20%)을, 한도액만큼 환급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따른 환급한도 인상률(30→40만원, 33.3%)을 각각 적용하여 세수효과 산출
- 향후 환급 실적은 경형 승용·승합자동차 수요, 친환경자동차 보급 추이, 유류비 부담 수준 등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이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¹⁾

1) 예를 들어, 경형 승용·승합자동차의 누적등록대수는 2022년 213만대에서 2024년 217만대로 증가하였으나 2025년 215만대, 2026년 3월 말 214만대로 감소하였음(국토교통부, 연도별 자동차등록통계) 그러나 경형 승용자동차 내수 판매 실적은 2022년 13.3만대에서 2025년 6.5만대까지 감소하였으나, 2026년 1분기 판매 실적은 1.7만대 수준으로 집계되어 2025년 1분기 1.6만대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2026.03. 자동차통계월보)

- 2022년 연간 환급한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여 2022년 이후의 자료만 활용
- 연간 개별소비세 환급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평균 환급액은 약 12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환급 한도액 상향에 따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가정
- 연간 개별소비세 환급액이 30만원인 경우 개별소비세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상향된 한도액 40만원만큼 환급받는다고 전제

[표 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휘발유·경유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현행 한도액(30만원) 미만	-56,725	-56,725	-56,725
현행 한도액(30만원) 환급	-12,679	-12,679	-12,679

(2) LPG부탄분 세수효과 추계

-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5년 LPG부탄분 환급 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5] 2022~2025년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실적: LPG부탄

(단위: 건, 백만원)

		2022	2023	2024	2025
현행 한도액 (30만원) 미만 환급	환급건수	20,123	18,461	16,428	14,239
	환급액	1,770	1,505	1,402	1,332
	건당 환급액 (만원)	9	8	9	9
현행 한도액 (30만원) 환급	환급건수	522	452	495	808
	환급액	157	136	149	244
	건당 환급액 (만원)	30	30	30	30
전체	환급건수	20,645	18,913	16,923	15,047
	환급액	1,928	1,641	1,551	1,576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향후 추계기간 동안 LPG부탄분 환급건수와 환급액은 2025년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되, 현행 한도액 미만으로 환급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2025년 연간 평균 환급단가 대비 2027년 이후의 환급단가

증가율(229.0→247.5원, 8.0%)을, 한도액만큼 환급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따른 환급한도 인상률(30→40만원, 33.3%)을 각각 적용하여 세수효과 산출

- 2022~2025년 LPG부탄 환급건수 및 환급액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중동 전쟁 등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 등에 따라 향후 변동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2025년 환급액이 향후에도 지속된다고 가정
- LPG부탄의 경우 연중 탄력세율 변화에 따라 환급단가가 변동되므로, 연중 탄력세율 및 탄력세율 적용기간을 고려하여 평균 환급단가를 산출²⁾
 - LPG부탄의 경우 세액 전액이 환급되므로, 탄력세율이 변화하면 이에 맞추어 환급단가도 변화하게 됨
 - (2025년 LPG 부탄 탄력세율) (1.1.~4.30.) 212원/kg, (5.1.~10.31.) 234원/kg, (11.1.~12.31.) 247.5원/kg
- 2026년 연말까지는 2026년 5~9월(206원/L)의 탄력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2027년부터는 2026년 4월 수준(247.5원/L)으로 환원된다고 가정
 -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불안정성에 따라 2026년 5~9월동안 종전(4월)보다 41.5원/kg 낮은 206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
- 연간 개별소비세 환급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평균 환급액은 약 9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환급 한도액 상향에 따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가정
- 연간 개별소비세 환급액이 30만원인 경우 개별소비세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상향된 한도액 40만원만큼 환급받는다고 전제

[표 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LPG부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현행 한도액(30만원) 미만	-1,440	-1,440	-1,440
현행 한도액(30만원) 환급	-325	-325	-325

다. 추계결과

□ 앞서 산출한 유종별 세수효과를 합산하여 총 세수효과를 산출하면 다음

2) 연간 평균 환급단가는 아래 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text{연간 평균 환급단가} = \frac{\sum [\text{환급단가}(\text{탄력세율}) \times \text{환급단가}(\text{탄력세율})\text{적용기간}(\text{일수})]}{365}$$

과 같음

-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환급액 및 환급한도를 확대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712억원 등 2027~2029년까지 3년간 총 2,135억원(연평균 71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7]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유종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휘발유·경유	-694	-694	-694	-2,082	-694
LPG부탄	-18	-18	-18	-53	-18
계	-712	-712	-712	-2,135	-712

□ 위 추계결과를 세목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환급액 및 환급한도를 확대할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2027년 694억원 등 2027~2029년까지 3년간 총 2,082억원(연평균 69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환급액 및 환급한도를 확대할 경우 개별소비세 수입은 2027년 18억원 등 2027~2029년까지 3년간 총 53억원(연평균 1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8]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목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환급액 및 환급한도 확대 (안 제111조의2)	-712	-712	-712	-2,135	-712
교통·에너지·환경세	-694	-694	-694	-2,082	-694
개별소비세	-18	-18	-18	-53	-18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신홍철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홍철	02-6788-4745	hongfe@assembly.go.kr